

2019 회계연도 결산 감사의 권서



-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 신 : 서구청장

2020. 5. 6.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 4. 17. ~ 5. 6.(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이 주 한(서구의회의원)
- 위 원 : 배 영 민(세 무 사)
- 위 원 : 안 태 경(공인회계사)

대구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

차 례

□ 결산검사 의견서	3
□ 결산검사 개요	5
□ 결산 현황 및 분석	6
1. 총 관	6
2. 세입·세출 결산	7
3. 기금 결산	9
4. 재무제표	10
5. 성과보고서	12
6. 결산서의 첨부서류	13
7. 금고 결산	15
□ 결산검사 결과	16
1. 총 평	16
2. 지적 및 개선방안	18

결 산 검 사 의 견 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어 이번 결산검사가 무난히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6.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대표 위원 이 주 한 (인)

위 원 배 영 민 (인)

위 원 안 태 경 (인)



□ 결산검사 개요

1. 검사방향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사
- 구의 예산이 경상적경비 등 소모성 경비보다 주민복지 분야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

2. 검사사항

- 결산개요
- 세입·세출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3. 검사기간 : 2020. 4. 17. ~ 5. 6.(20일간)

4.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이 주 한 (서구의회의원)
- 위 원 : 배 영 민 (세 무 사)
- 위 원 : 안 태 경 (공인회계사)

□ 결산 현황 및 분석

1. 총괄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음.
 예산현액 463,580,695,680원(전년도 이월액 25,697,344,680원 포함)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76,662,407,97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0,165,611,576원이며, 잉여금은 66,496,796,397원이다.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합계	463,580,695,680	476,662,407,973	410,165,611,576	66,496,796,397
일반회계	453,688,831,570	466,689,351,981	402,967,215,766	63,722,136,215
특별회계	9,891,864,110	9,973,055,992	7,198,395,810	2,774,660,182

-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476,66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8%이며 세출결산액은 410,16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8.5%임.
- 잉여금 66,497백만원은 명시이월액 27,603백만원(41.5%), 사고이월액 3,933백만원(5.9%), 보조금실제반납금 5,258백만원(7.9%), 순세계잉여금 29,703백만원(44.7%)으로 명시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490,167,211,845원(전년도 이월액 25,697,344,680원 포함)이고, 수납액은 476,662,407,973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 예산액 ㉑	징수 결정액 ㉒	실제 수납액 ㉓	불납 결손액 ㉔	미수납액 ㉕	비율(%)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합계	463,580,695,680	490,167,211,845	476,662,407,973	1,712,860,240	11,791,943,632	102.8	97.2
일반회계	453,688,831,570	480,193,308,993	466,689,351,981	1,712,860,240	11,791,096,772	102.9	97.2
특별회계	9,891,864,110	9,973,902,852	9,973,055,992	0	846,860	100.8	100.0

- 수납액 476,662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02.8%로 전년도(102.9%)에 비해 수납비율이 0.1% 하락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7.2%로 전년도(97.2%)와 동일하였음.
- 미수납액 11,792백만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2.4%로 전년도 2.4%와 동일하였음.
-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 775백만원(6.6%), 행방불명 539백만원(4.6%), 납세태만 6,972백만원(59.1%), 폐업 또는 부도 681백만원(5.8%), 채무자회생유예 및 자금압박 등이 2,825백만원(23.9%)으로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세출예산현액 463,580,695,680원(전년도 이월액 25,697,344,680원 포함)에 대한 지출액은 410,165,611,576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합 계	437,883,351,000	463,580,695,680	410,165,611,576	31,535,727,780	5,692,625,183	16,186,731,141	88.5%
일반회계	434,527,205,000	453,688,831,570	402,967,215,766	29,143,925,420	5,595,073,263	15,982,617,121	88.8%
특별회계	3,356,146,000	9,891,864,110	7,198,395,810	2,391,802,360	97,551,920	204,114,020	72.8%

- 지출액 410,166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88.5%로 전년도(81.3%)에 비해 7.2% 증가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31,536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5,693백만원, 집행잔액 16,187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6.8%, 1.2%, 3.5%로 나타났음.
- 특히 다음년도 이월액 31,536백만원은 전년도(25,697백만원)에 비해 22.7%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27,602백만원(87.5%), 사고이월 3,933백만원(12.5%)로 나타났음.
- 보조금반납금 5,693백만원은 전년도(4,854백만원)에 비해 17.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16,187백만원은 전년도(46,211백만원)에 비해 65.0%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금정산잔액 1,410백만원(8.7%), 예산절감 139백만원(0.9%), 낙찰차액 및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및 지출잔액 6,798백만원(42.0%), 예비비 7,840백만원(48.4%)으로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3. 기금 결산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5,946,140,85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46,098,311,539원, 당해연도 사용액 976,742,18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067,710,216원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합 계	5,946,140,857	46,098,311,539	976,742,180	51,067,710,216
재정안정화기금	0	45,000,000,000	0	45,000,000,000
청소년육성기금	108,207,858	1,807,472	110,015,330	0
자활기금	1,131,714,863	66,481,413	100,000,000	1,098,196,276
노인복지기금	501,826,831	7,748,102	2,851,530	506,723,403
식품진흥기금	204,388,371	56,484,486	103,577,240	157,295,617
옥외광고발전기금	200,006,575	203,103,858	0	403,110,433
재난관리기금	2,500,107,385	562,468,346	633,521,080	2,429,054,651
주차시설확충기금	1,299,888,974	200,217,862	26,777,000	1,473,329,836

- 당해연도 조성액 수입 46,098,312천원은 전입금 45,498,837천원, 보조금 258,927천원, 융자금회수 22,603천원, 예치금 회수 3,094천원, 이자수입 101,485천원, 기타수입이 213,366천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 976,742천원은 비융자성사업비 759,636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기타지출 117,106천원임.

4. 재무제표

2019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18	전년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944,161	912,684	31,477	3.45
I. 유동자산	126,340	105,043	21,297	20.28
II. 투자자산	4,436	4,566	△130	△2.85
III. 일반유형자산	62,362	63,298	△936	△1.48
IV. 주민편의시설	145,095	140,726	4,369	3.11
V. 사회기반시설	605,447	598,832	6,615	1.11
VI. 기타비유동자산	481	219	262	119.64
부 채	15,925	14,233	1,692	11.89
I. 유동부채	7,661	5,951	1,710	28.74
II. 장기차입부채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8,264	8,282	△18	△0.22
순 자 산	928,236	898,451	29,785	3.32
I. 고정순자산	813,337	803,041	10,296	1.28
II. 특정순자산	51,414	6,184	45,230	731.40
III. 일반순자산	63,485	89,226	△25,741	△28.85

- 우리구 자산총계는 944,161백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31,477백만원(3.45%)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임.
- 유동자산은 21,297백만원(20.28%), 주민편의시설은 4,369백만원(3.11%), 사회기반시설은 6,615백만원(1.11%), 기타비유동자산 262백만원(119.64%)증가하였으며, 투자자산은 130백만원(2.85%), 일반유형자산 936백만원(1.48%)감소하였음.

- 부채총계는 15,92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92백만원(11.89%)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미지급금(보조금반납금)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대비증감	
			금 액	비 율
I.사업순원가(가 - 나)	39,287	42,712	(3,425)	(8.12)
가. 사업총원가	275,574	244,522	31,052	12.70
나. 사업수익	236,287	201,810	34,477	17.08
II.관리운영비	69,471	64,057	5,414	8.45
III.비배분비용	7,912	6,883	1,029	14.95
IV.비배분수익	4,631	6,210	(1,579)	(25.43)
V.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12,039	107,442	4,597	4.28
VI.수익	141,765	129,069	12,696	9.84
VII.재정운영결과(V - VI)	(29,726)	(21,627)	(8,099)	(37.45)

-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구 사업순원가는 39,287백만원, 관리운영비 69,471백만원, 비배분비용 7,912백만원, 비배분수익 4,631백만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는 112,039백만원이고, 수익은 141,765백만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한 결과는 -29,726백만원임.

5. 성과보고서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의해 작성된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보고서로

- 전략목표수는 7개, 정책목표는 51개이며 이에 따른 지표수는 140개임.
- 성과달성도를 보면 총 지표수 140개 중 초과달성은 8개, 달성은 110개, 미달성은 22개로 84.29%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 실국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 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51	140	8	110	22	410,166	334,768	75,398
기획예산실	1	1	3	0	2	1	50,397	15,170	35,227
자치행정국	1	15	40	2	37	1	56,673	50,098	6,575
복지생활국	1	19	58	3	38	17	241,453	213,699	27,754
도시안전국	1	12	27	3	21	3	32,654	29,382	3,272
보건소	1	1	6	0	6	0	11,435	10,020	1,415
문화회관	1	2	3	0	3	0	2,941	2,689	252
의회사무국	1	1	3	0	3	0	1,769	1,749	20
동주민센터	0	0	0	0	0	0	12,844	11,961	883

6. 결산서의 첨부서류

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외 75건인 31,535,727,78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63건 27,602,474,230원이고, 사고이월이 13건
 3,933,253,55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6건	31,535,727,780	63건	27,602,474,230	13건	3,933,253,550
일반회계	73건	29,143,925,420	61건 (구청사 구내식당 옥상증축 외)	25,368,959,950	12건 (구청사뿐만 구조및 내진보강사업외)	3,774,965,470
재정비 추진 특별회계	3건	2,391,802,360	2건 (평리재정비 추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2,233,514,280	1건 (평리재정비 추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158,288,080

- 이월액 31,535,727,780원은 예산현액 대비 6.8%로, 전년도이월액 25,697,344,680원보다 5,838,383,100원이 늘어 22.72% 증가하였음.

나. 채권·채무 현황

(1)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4,697,381,080	194,800,000	349,190,000	4,542,991,080
일 반 회 계	4,460,427,520	94,800,000	328,590,000	4,226,637,520
기타특별회계	1,953,560	0	600,000	1,353,560
기금	235,000,000	100,000,000	20,000,000	315,000,000

2018년도말 채권현재액 4,697,381,080원에서 2019년에 194,800,000원이 발생하고 349,190,000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542,991,080원임.

(2) 채무

채무액은 없음.

다. 물품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점, 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수 량	850	55	41	864
금 액	6,658,218,628	593,410,862	553,230,775	6,698,398,715

2018년도말 물품현황은 29종 6,658,218,628원이고 당해연도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93,410,862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553,230,775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29종 6,698,398,715원임.

7. 금고 결산

세입·세출 결산액은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상의 금액과 일치함.

2019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단위 : 원)

구	분	세입	세출	잔액
합	계	476,662,407,973	410,165,611,576	66,496,796,397
일	반 회 계	466,689,351,981	402,967,215,766	63,722,136,215
특별회계	소 계	9,973,055,992	7,198,395,810	2,774,660,182
	의료급여	798,494,993	747,058,210	51,436,783
	지하수관리	238,240,538	28,421,850	209,818,688
	재정비축진	8,936,320,461	6,422,915,750	2,513,404,711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

대구광역시 서구금고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장

□ 결산검사 결과

1. 총 평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지방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종합 분석하여 재무운영상의 취약성 및 문제점을 도출·시정시킴으로써 향후 예산운영이 적정·적법하게 이뤄지게 함에 그 목적을 두고 본 위원들은 검사에 임하였으며, 분야별로는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지방회계법, 재무회계규칙, 결산지침 등 제반규정에의 적법성, 적정성과
 - 공유재산, 채권, 채무, 물품 등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검사에 중점을 두었음.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분석하면 예산액 437,88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25,697백만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은 453,581백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476,66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이고, 세출결산액은 410,16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8.5%로서 차액 66,49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이월금 중 명시이월액 27,603백만원, 사고이월액 3,933백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5,25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703백만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대비 6.4%임.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예산현액 453,688,831,570원에 대비한 세입결산액은 466,689,351,981원으로 예산현액의 102.9%이고 세출결산액

402,967,215,766원은 세입액의 88.8%로 그 차액은 63,722,136,215원이며, 명시이월 25,368,959,950원, 사고이월 3,774,965,470원, 보조금실제반납금 5,246,090,073원, 순세계잉여금은 29,332,120,722원임.

- 순세계잉여금 29,332,120,722원은 초과세입금 13,000,520,411원과 세출예산불용액 16,331,600,311원이며, 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현액 9,891,864,110원에 대비한 세입결산액은 9,973,055,992원으로 예산현액의 100.8%이고, 세출결산액 7,198,395,810원은 세입액의 72.8%로 그 차액은 2,774,660,182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이 2,233,514,280원, 사고이월액이 158,288,080원, 보조금실제반납금이 12,048,920원, 순세계잉여금은 370,808,902원임.

2. 지적 및 개선방안

가.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성과보고서 작성 근거 및 기준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근거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 성과계획서는 전년도에 해당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고, 성과보고서는 다음연도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함.
- 이에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고,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의 임의 변경, 측정 방법 및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로 보고를 하여서는 안 됨.

○ 문제점

- 당해연도 성과보고서는 당해연도 성과계획서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는 작성 시기 상 전년도에 작성함으로써 달성성과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달성성과로 수정하여야 하고,
- 전년도 달성성과는 전년도 성과보고서의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호조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전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추정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미작성하는 등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미준수하여 부실하게 작성하였음.

○ 개선방안

-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당초에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적치로 일부 수정하고, 전년도 달성성과는 전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의 수치와 일치되게 결산검사 기간 중에 수정·보완하였음.
- 차기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노력없이 외부요인에 따라 자동달성되는 성과지표는 배제하고, 성과목표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기 바람,
-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와 측정산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고, 성과 미달성(100%미만) 및 초과달성(130%이상)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차기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나. 성인지결산서 작성 미흡

○ 성인지결산서 작성 근거 및 기준

- 성인지결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며,
- 성인지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년도 9~10월경 본예산안과 동일한 시기에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 문제점

- 성인지결산서 작성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당해연도만을 기재하고 전년도 현황을 일부 누락하였으며,
- 전년도(2018회계연도) 및 전전년도(2017회계연도)의 결산서 상의 실적치를 반영하지 않고 e-호조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예산서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 성인지결산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음.

○ 개선방안

- 성인지결산서 작성기준 변경사항(성과목표 달성현황의 전년도 실적 추가)과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결산서 상의 실적치와 일치되게 결산검사기간 중에 수정·보완하였음.
-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성차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서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노력하기 바람.

다. 당기 퇴직금 지급액의 과다지급

○ 당기 정년퇴직자의 퇴직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해연도 퇴직금(A)	재계산 금액(B)	차 액 (A-B)
환경공무직	1,839,958,730	1,793,520,360	46,438,370

○ 문제점

- 일반회계의 환경공무직의 정년퇴직 시 퇴직금 지급액에 대하여 담당자가 검증되지 않은 엑셀파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액을 계산하고 있음.
- 퇴직자들의 근속연수를 잘못 계산하여 일부 퇴직자(6명)에 대하여 퇴직금 46,438,370원이 과다 지급됨.

○ 개선방안

- 환경공무직의 체계적인 인사, 급여관리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별도의 환경공무직 인사·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퇴직 금지급 시에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오류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경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퇴직금 지급액을 포함한 지출결의서를 결재할 때 재계산 검증한 후 송금해야 할 것임.

라.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관리 철저

○ 보고서 상 정수와 당해연도말 보유수량의 차이

(단위 : 원)

정무물품분류번호	품명	정수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차이수량
25101501	미니버스	9	10	1
25101503	일반승용차	13	11	-2
25101505	미니밴또는밴	11	7	-4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6	-2
25101509	승용전기자동차	19	21	2
25101611	화물트럭	67	29	-38
25101910	살수차	2	1	-1
25101963	노면청소차	8	3	-5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32	16	-16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47	36	-11
40101701	냉방기	59	58	-1
40101787	냉난방기	428	450	2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74	82	8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74	78	4
45111705	구내방송장치	4	10	6

○ 문제점

-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상 정수와 당해연도말 보유수량이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이 있음.

○ 개선방안

- 각 물품별 정수를 실제 각 부서의 소요량에 맞게 재산출하고, 매 회계연도말 정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정수를 실제 소요량에 맞게 재산출한 후 정수대비 부족한 물품은 예산으로 반영하여 구입하며, 과다보유한 물품은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리 철저

○ 2019년 공유재산 매각 내역

(단위 : 원)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공유재산매각 수입금(213-03)	3,783,615,940	1,250,771,670	2,532,844,270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재산매매계약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의해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기한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함.
- 매각결정 후 매매계약체결일을 징수결의일로 하여 납입기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매계약서 상에 매각대금 납부일로 지정하며, 통상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납부일로 지정하고 있음.
- 매매계약서상에 지정된 매각대금 납부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을 근거로 납부기한 60일 범위에서 임의 수정하여 집행되고 있음.

○ 개선방안

- 계약 시 매매계약서 상에 지정한 매각대금 납부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내부결재 및 통제가 필요함.